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출산 후 30일 이내

【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38,000	42,099	12,761	42,168
2인	2,278,000	71,374	59,490	71,788
3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100%이하)	3,615,000 (4,519,000)	112,792 (141,300)	126,195 (161,163)	114,241 (143,379)
5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인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7인	5,622,000	176,657	197,937	179,545
8인	6,291,000	198,786	221,190	202,519
9인	6,960,000	218,525	243,150	223,032
10인	7,628,000	242,183	266,785	249,924

※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 시 적용)

- | | |
|---------------------------------|-------------------|
| ①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④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⑤ 결혼이민 산모 | ⑥ 새터민 산모 |
| ⑦ 미혼모 산모 | ⑧ 분만취약지 산모 |
| ⑨ 둘째아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 |

□ 신청서류

① 산모 신분증

② 건강보험카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1개월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주소지 분리되어있거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시 ② ③ 서류 제출 생략.

□ 신청 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사천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 지원제외 대상 :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서비스를 받은 자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자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

-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은 제공기관과 계약 시 선택

□ 서비스 제공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 첨부파일 참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황(사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참사랑어머니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27-1	055-833-0882	
영 케 어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11	055-853-0500	

□ 문의전화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831-3527